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거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 먼저, 프로운동경기는 대중인기에 영합함으로써 흥행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활동인 순수한 의미의 노동이라고는 볼 수 없음.

다음으로 프로선수의 입단 계약 시 체결되는 계약금 및 보수는 개개 선수의 대중인기 등 특수요인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노동의 질을 결정하는 학력, 경력, 연령, 숙련도 등 복합적 요소에 의거 결정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는 볼 수 없음.

끝으로 프로선수는 구단주 및 감독의 지휘 하에 있으나 이는 경기의 흥행성공을 위한 개개 선수의 능력을 기술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노·사간에 근로관계 상·하간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과는 동일시 할 수 없음.

☞한국종합노동법원한술사무소 (031-877-7882-3)

Q 오토바이 택배사원의 근로자 여부

A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함은 동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이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라이더가 본인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단으로 택배수령에 따라 수입을 취득하고 오토바이 유지비는 물론 배달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등 독자적인 책임 하에 사업을 운영한다면 이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Q 프로야구 선수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A '프로야구선수'의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는 별첨 프로야구 선수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지침에 의

전·기·상·식

경기도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대표이사 안병호



Q 변전소나 송전선로가 가까운 주위에 있으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요?

A 일반적으로 변전소가 부근에 있으면 인체에 무슨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송전전압을 사용하고 전력소비를 많이 하는 미국 및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 송배전설비에 의한 전자파 노출이 가장 많은 송배전선로 작업원 및 변전소 근무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해 본 결과 전자파에 의한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한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밀 신체검사를 하고 있으나 전자파에 의한 건강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경기도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031-541-9111)

Q 전자파란 무엇입니까?

A 전기가 흐르는 모든 도체에서는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 자계가 발생합니다. 이 전자파흐름의 변화에 따라 자계의 세기가 변화하면 전자유도법칙에 의해 전계가 발생하여 유도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유도전류에 의해 다시 자계가 발생하고 이 자계에 의해 전계가 발생됩니다. 즉, 고요한 수면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 나가는 것과 같이 자계와 전계가 번갈아 발생되면서 공간으로

퍼져 나가는데 이를 전자파라 합니다. 전자파의 발생은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구 및 가전제품과 송배전설비 등 전기가 흐르는 모든 제품과 설비에 발생되며 전자파의 종류는 파장에 따라 구분되는데 파장의 길이에 따라 분류하면 전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파는 단지 전기제품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에서도 여러 파장의 전자파가 지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전계 및 자계세기의 단위는 주로 kv/M와 mG(milli-Gaus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학·상·식

포천병원 이비인후과장 강진욱



미 내이까지 중이염이 파급된 경우에는 청력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막의 천공은 만성화농성 중이염 때와 진주종성 중이염 때가 각각 다른데 이러한 고막의 천공 양상을 통해 감별할 수 있다.

3.치료

만성 중이염은 수술적 치료가 원칙이다. 만성 중이염의 수술은 병소를 제거하여 다이상 병이 진행되지 않게 하며, 청력회복을 도모하고 가능한 정상적인 중이내의 구조를 유지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술 전에 자세한 청력검사와 측두골 전산화 단층촬영(CT스캔)을 꼭 실시해야 한다.

보존적인 치료로 항생제나 소염제를 투여하거나 중이강내 세척 등으로 분비물을 없게 하거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특히 열증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 전에 약물치료를 통해 염증을 충분히 치료한 다음에 수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비강이나 인두의 검사를 통해 이곳에 염증이 있으면 먼저 치료해 주고, 알레르기가 있으면 수술 후 치료가 지연되고 재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사 및 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

☞포천병원(031-539-9114)

만성 중이염

여러가지 합병증을 초래하기 쉽다. 2 증상: 고막천공, 이루, 난청 고막에 구멍이 나고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것이 특징적인 3가지 증상이다. 귀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 정도부터 와이도로 흘러 나오는 경우도 있다. 급성 악화기에는 양이 증가하며, 골파괴를 동반하는 진주종성중이염 때에는 분비물 속에 회백색의 물질이 생겨 분비물의 배출을 막거나 뇌막염, 뇌농양 등의 합병증이 동반 통증을 생기며 이와 같은 심한 귀의 통증이나, 발열, 두통, 현기증 등의 위험신호가 생기면 두개내 합병증을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청력장애는 고막, 이소골 및 중이내의 병변에 따라 그 정도가 결정된다. 이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Q [매수대상 토지의 30%가 도로로 편입될 때 계약취소 가능하지]

저는 건물 신축을 위하여 甲소유 토지 70평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당시 甲과 乙은 乙이 甲에게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위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40여평만 도로로 편입될 것이므로 건물신축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까지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200평 정도가 도로로 편입된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데, 그렇다면 저는 목적인 건물 신축을 할 수 없는 형편으로서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109조에 의하면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시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건물신축을 위하여 매수하려던 토지 중 약 28%인 200평 정도가 도로로 편입된다면 그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수령할 수 있을 것이지만, 당초 목적인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할 경우 그것은 위 토지매수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률행위의 동기에 착오가 있을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취소가 가능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

는 않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시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시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시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매매대상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로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체결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로 편입된 경우, 매매대상토지 중 도로편입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따라서 위 판례에서와 같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할 경우가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귀하도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위 토지매매 계약의 취소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김제동 변호사(031-829-931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성매매 극복을 향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다시함께센터)조진경 소장님의 글 발췌한 내용입니다. 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처벌법

* 성매매 용어도입 성매매방지법은 이전의 '윤락'이란 말을 없앤 대신 '성매매'라는 용어를 도입했다. 윤락이 성매매를 도덕적 문제로 보는 반면, 성매매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 성을 상품화하는 사실을 보여주며 나아가 성매매를 범죄로 보겠다는 관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 여권 또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제공한 후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이다.

*성매매 관련 채권의 무효 범위 성매매를 알선한 자, 성매매 여성을 고용, 모집, 소개한 자,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매매 여성에게 갖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같다. 따라서 소개업자, 업주 등이 여성에게 갖는 성매매를 전제 한 선부금 채권뿐만 아니라, 업주자 선불금 채권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무효가 된다. 또한 수사기관은 성을 파는 자의 채무불이행사건을 수사할 때 당해 채권이 이와 같은 불법원인채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Q [부부간 증여 부동산의 양도시기 결정]

2008년 1월 시가 3억원 상당의 본인 명의 아파트를 부인에게 증여로 명의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를 활로 사업자금 압박으로 아파트를 처분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요? 참고로 현재의 시세는 5억원 정도이며 본인이 최초 취득은 2001년 12월에 1억원에 분양 받았습니다.

A 배우자에게 아파트,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골프클럽회원권 및 폰도

미니업회원권 등의 특정시설물이용권을 증여하고 나서,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 이전의 배우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최초 취득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증여한 날로부터 5년 후인 2008년 1월 이후에 배우자가 증여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귀하의 계획대로 지금 양도하시

게 되면 양도가액 5억원에서 최초 취득가액 1억원을 차감한 4억원의 양도차익이 계산되고,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가액 5억원에서 증여가액 3억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차감하면 양도차익이 2억원으로 계산되어 세율이 38%인 경우 7천2백만원의 세금이 발생됩니다.

즉, 증여 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됨으로써 7천2백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부부간의 증여가 3억원까지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의 취득원가를 높임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하는 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부간의 증여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세금 부담액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세무사 박 운중 031-872-6116

대자연의 선물에 정성을 듬뿍담은...

꽃샘

종합선물세트

■건강을 선물하는 알뜰가액 2만원대 부터...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꽃샘고려홍삼물세트 홍삼골 1000g



꽃샘특선봉밀1호 집화골 2200g



꽃샘기희세트1호 대추꿀차 1200g / 집화골 1200g



꽃샘기희세트2호 영지꿀차 1200g / 집화골 1200g



GS기희세트 집화골 1200g / 술임꿀차 1200g



꽃샘프리미엄물세트1호 아카시아 1200g / 집화골 1200g



꽃샘토종고기구3호 토종골 1200g



꽃샘토종고기구1호 토종골 2400g



꽃샘꿀차세트 영지꿀차 1200g / 대추꿀차 1200g



꽃샘5호 꿀대추차, 꿀유자차, 꿀솔잎차 x 1000g



꽃샘8호 영지꿀차 1200g / 홍삼100 70ml x 7포, 대추꿀차 1200g



꽃샘4호 영지꿀차, 술임꿀차, 대추꿀차 x 600g